

병원과의 담합 의심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외래 환자에게 행정  
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- 원고적격 인정: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9.

선고 2019구합23013 판결



○ 기초사실

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,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  
제받는 사람인데,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, 상호도 부분  
적으로 동일하므로,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, 이 사건 병  
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·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 
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

○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- 법률상 이익 부정, 청구인 적격 부정

라.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. 6. 25. '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하다'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.

○ 법원의 판결요지 - 법률상 이익 인정, 원고 적격 인정

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,

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,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 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,

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.

첨부: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9.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

약사변호사, 손해배상, 의료기기법, 인허가법률자문, 행정소송, 특허심판소송, 영업비밀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